



부산지방우정청

수신자 백모실업 대표 유** (5167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2)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재통지)

1. 관련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라. 행정절차법 제2장 제1절 통칙,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 마. 나라장터계약번호-2015102449800(2015.10.27., 2015년도 겨울근무복(창구근무복) 제조·구매)
- 바.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4785(2016.08.02., 업무 협조 요청)
- 사. 조달청 자재장비과-14882(2016.12.02., 범죄사실 수사결과 알림 및 필요사항 조치 요청)
- 아. 조달청 자재장비과-11080(2017.08.11., 범죄사실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 알림 및 필요사항 조치 요청)
- 자. 회계정보과-746(2017.09.01.,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추진)
- 차. 회계정보과-749(2017.09.0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시고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백모실업 대표 유* * (사업자번호 : 609-19-60845)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5년 우리청 겨울근무복(창구근무복) 제조 입찰시 업체간 담합 및 허위 증빙서류(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입찰 담합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청문실시	기관명	부산지방우정청	부서명	회계정보과	담당자	김미정	
	주 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전화번호	051-559-3259	
	일 시	2017년 9월 25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 소	8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장				
		성 명	서은숙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산지방우정청	부서명	회계정보과	담당자	김미정
		주 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전화번호	051-559-3259
		전자우편주소	hsmj7074@korea.kr			팩스번호	0505-005-1458
	제출기한		2017년 9월 22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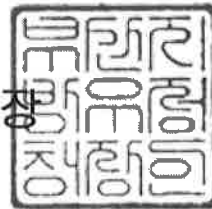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부산지방우정청장



★주무관

김미정

회계정보과장

전결 09/11
서은숙

협조자

시행 회계정보과-935

(2017.09.11.) 접수

()

☎ 47502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거제동, 부산지방우정청) / <http://koreapost.go.kr/bs>
전화 051-559-3259 / 전송 0505-005-1458 / hsmj7074@koreapost.go.kr / 비공개(7)